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2020. 5. 14.] [조례 제1303호, 2020. 5. 14., 일부개정]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 기본법」등 국가보훈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12.26)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희생·공헌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이 정하는 적용 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 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국가보훈대상자"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3. "국가보훈관계 법령"이란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2.12.31)
4. "보훈단체"란 국가보훈관계 법령의 적용을 받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12.12.31)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성북구"라 한다)에 주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또는 보훈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로 한다. (개정 2019.12.26)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9.12.26)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9.12.26)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신설 2019.12.26)
4.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신설 2019.12.26)
5.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및 단체 (신설 2019.12.26)
6.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9.12.26)
7.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사람 (신설 2019.12.26)
8.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는 단체 (신설 2019.12.26)

[전문개정 2012.12.31]

제4조(예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구민참여 각종 행사 시 국가보훈 대상자를 초청하여 의전상 예우
2. 보훈 관련 행사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위로 및 격려 (개정 2012.12.31)
3. 보훈 관련 기념행사 시 모범 국가보훈대상자 표창 수여 (신설 2019.12.26)

제5조(예산지원)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단체가 추진하는 제6조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조금을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지원대상사업) 단체에 대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훈회관 및 보훈단체 운영 등에 필요한 사업
2. 호국·보훈정신 함양·고취를 위한 교육 및 전적지 순례
3. 호국·보훈의 달 참배유족 수송지원 사업
4. 국가보훈대상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사업
5. 지역사회 발전과 공익활동을 위한 사업
6. 그 밖에 구청장이 보훈단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전문개정 2012.12.31]

제6조의2(보훈예우수당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예우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지원 부적격자로 통보된 사람,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9.12.26, 2020.5.14.)

② (삭제 2019.12.26)

③ 보훈예우수당은 신청한 날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신설 2019.12.26)

④ 보훈예우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26)

[본조신설 2017.12.28]

제6조의3(사망위로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2조제1호에 따른 희생·공헌자가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다가 사망한 때에는 그 유족에게 사망위로금(이하 "위로금"이라 한다)으로 2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보훈청장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제79조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한 사람은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위로금은 국가유공자법 제5조에 따른 유족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위로금 지급이 가능한 유족의 순위는 국가유공자법 제13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6조의4(위문금 지급) ① 구청장은 제3조에 해당하는 희생·공헌자 또는 그 유족 중 국가보훈처에서 선순위자로 지정한 1명으로서 현재 성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3개월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설과 추석, 호국·보훈의 달에 위문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6조의2에 따른 수당 수급자는 설, 추석 위문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5.14.)

② 위문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12.26]

제7조(지원신청 및 보고) ① 제6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체의 장은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26)

②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 결과를 정산하여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26, 2019.12.26)

제8조(관계기관 협조 등) 구청장은 희생·공헌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 추진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12.31]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중복지원 금지 적용 예) 이 조례 시행 후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의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이 조례에 의한 지원을 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부칙 (2012.12.31 조례 제92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26 조례 제1016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성북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서울특별시 성북구 보조금 관리 조례"를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2017.12.28. 조례 제11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26. 조례 제128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망위로금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3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희생·공헌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성북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조례」는 폐지한다.

부칙 (2020.5.14. 조례 제130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